안전대 사용지침

2012. 8.

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김 진 걸
- 제·개정경과
 - 1999년 7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 - 1999년 8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
 - 2012년 7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 - 미국 CFR (M-1926.502): FALL PROTECTION SYSTEMS AND PRACTICES
-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6장의 규정
 - 노동부 고시 제2009-43호(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)
 - 노동부 고시 제2009-38호(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8월 27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C - 49 - 2012

안전대 사용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(이하'법'이라 한다) 제27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'안전보건규칙'이라 한다) 제1편 제6장의 규정에 의하여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 사용지침을 정함으로써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벨트"라 함은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허리에 착용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.
- (나) "지탱벨트"라 함은 U자걸이를 사용할 때 벨트와 겹쳐서 몸체에 대는 역할 을 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.
- (다) "D링"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죔줄을 연결하기 위한 D자형의 금속고리를 말한다.
- (라) "각링"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신축조절기를 연결하기 위한 사각 형의 금속고리를 말한다.

- (마) "박클"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를 신체에 착용하기 위해 그 끝에 부 착한 금속장치를 말한다.
- (바) "훅 및 카라비나"라 함은 죔줄과 걸이설비 또는 D링과 연결하기 위한 금속장치를 말한다.
- (사) "신축조절기"라 함은 죔줄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 로우프에 부착된 금속 장치를 말한다.
- (아) "8자형 링"이라 함은 안전대를 1개걸이로 사용할 때 훅 또는 카라비나를 죔줄에 연결하기 위한 8자형의 금속고리를 말한다.
- (자) "죔줄"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를 구명줄 또는 구조물 등 기타 걸이 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줄모양의 부품을 말한다.
- (차) "보조죔줄"이라 함은 안전대를 U자 걸이로 사용할 때 U자 걸이를 위해 훅 또는 카라비나를 지탱벨트의 D링에 걸거나 뗴어낼 때 잘못하여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링과 걸이설비연결에 사용하는 훅 또는 카라비나를 갖춘 줄모양의 부품을 말한다.
- (카) "U자걸이"라 함은 안전대의 죔줄을 구조물 등에 U자 모양으로 돌린 뒤훅 또는 카라비나를 D링에, 신축조절기를 각링 등에 연결하여 신체의 안전을 꾀하는 방법을 말한다.
- (타) "1개걸이"라 함은 죔줄의 한쪽 끝을 D링에 고정시키고 훅 또는 카라비나 를 구조물 또는 구명줄에 고정시켜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.
- (파) "안전그네"라 함은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전신에 착용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.

- (하) "추락방지대"라 함은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잠김장치를 갖추고 죔줄과 수직 구명줄에 연결된 금속장치를 말한다.
- (거) "안전블록"이라 함은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발생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잠김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죔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금속장 치를 말한다.
- (너) "수직구명줄"이라 함은 로우프 또는 레일등과 같은 유연하거나 단단한 고 정줄로서 추락발생시 추락을 저지시키는 추락방지대를 지탱해 주는 줄 모 양의 부품을 말한다.
- (더) "충격흡수장치"라 함은 추락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하중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갖는 죔줄 또는 수직구명줄에 연결되는 부품을 말한다.
- (2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안전대의 종류 및 명칭

4.1 안전대의 종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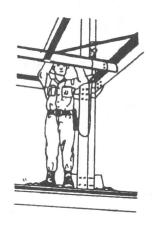
안전대의 종류는 <표 1> 및 <그림 1>과 같다.

<표 1> 안전대의 종류

종 류	등급	사 용 구 분	
벨트식(B식), 안전그네식(H식)	1종	U자걸이 전용	
	2종	1개걸이 전용	
	3종	1개걸이 U자걸이 공용	
	4종	안전블록	
	5종	추락방지대	



1종 (U자 걸이 전용)



2종 (1개 걸이 전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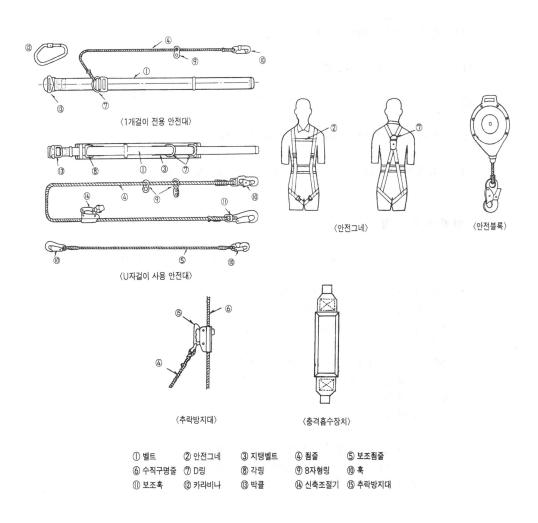


3종(1개걸이 U자걸이 공용)

<그림 1> 안전대의 종류

4.2 명칭

안전대의 부위별 명칭은 <그림 2>와 같다.



[그림 2] 안전대의 명칭

C - 49 - 2012

5. 안전대의 착용대상 작업

안전대는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,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.

- (1) 작업발판(폭 40cm)이 없는 장소의 작업.
- (2) 작업발판이 있어도 난간대가 없는 장소의 작업
- (3) 난간대로부터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경우
- (4) 작업발판과 구조체 사이의 거리가 30cm 이상으로 수평방호시설이 없는 장소의 작업

6. 안전대의 선정

안전대의 선정은 다음 사용목적에 적합한 안전대를 선정하여야 한다.

- (1) 1종 안전대는 전주 위에서의 작업과 같이 발받침은 확보되어 있어도 불안전하여 체중의 일부를 U자 걸이로 안전대에 지지하여야만 작업을 할 수 있으며, 1개 걸이의 상태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선정해야 한다.
- (2) 2종 안전대는 1개 걸이 전용으로서 작업을 할 경우, 안전대에 의지하지 않아도 작업할 수 있는 발판이 확보 되었을 때 사용한다. 다만 로우프의 끝단에 클립이 부착된 것은 수직지지 로우프만으로 안전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용한다.
- (3) 3종 안전대는 1개 걸이와 U자 걸이로 사용할 때 적합하다. 특히 U자걸이 작업시 후크를 걸고 벗길 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로우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.

C - 49 - 2012

- (4) 안전블록이 부착된 안전대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(가) 안전블록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지지의 방법으로 안전 그네 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나) 안전블록은 정격 사용길이가 명시되어야 한다.
- (다) 안전블록의 줄은 로우프, 웨빙, 와이어로우프이어야 하며, 와이어 로우프 인 경우 최소공칭지름이 4mm 이상이어야 한다.
- (5) 추락방지대가 부착된 안전대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(가) 추락방지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지지의 방법으로 안전 그 네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직구명줄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(나) 추락방지대와 안전그네간의 연결 죔줄은 가능한 짧고 로우프, 웨빙, 체인 등이어야 한다.
- (다) 수직구명줄에서 걸이설비와의 연결부위는 훅 또는 카라비나 등이 장착되 어 걸이설비와 확실히 연결되어야 한다.
- (라) 수직구명줄은 유연한 로우프 등이어야 하며 구명줄이 고정되지 않아 흔들림에 의한 추락방지대의 오작동을 막기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팽팽히 당겨져야 한다.

7. 안전대의 사용

- (1) 안전대의 착용은 다음에 정하는 착용방법에 따라야 한다.
- (가) 벨트는 추락시 작업자에게 충격을 최소한으로 하고 추락저지시 발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요골 근처에 확실하게 착용하여야 한다.

- (나) 박클을 바르게 사용하고, 벨트 끝이 벨트 통로를 확실하게 통과하여야 한다.
- (다) 신축조절기를 사용할 때에는 각 링에 바르게 걸어야 하며, 벨트 끝이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(라) U자걸이 사용시 후크를 각링이나 D링 이외의 것에 잘못 거는 일이 없도록 벨트의 D링이나 각링부에는 후크가 걸릴 수 있는 물건을 부착하지 말아야 한다.
- (마) 착용 후 지상에서 각각의 상태에서 체중을 걸고 각 부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.
- (바) 안전대를 지지하는 대상물은 로우프의 이동에 의해 로우프가 벗겨지거나 빠질 우려가 없는 구조로서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.
- (사) 안전대를 지지하는 대상물에 추락시 로우프를 절단할 위험이 있는 예리한 각이 있는 경우에는 로우프가 예리한 각에 접촉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.
- (2) 1개 걸이 사용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2종 안전대는 반드시 1.5m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나) 안전대의 로우프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 아야 하며, 작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높은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(다) 신축조절기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로우프의 길이를 짧게 조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(라) 수직 구조물이나 경사면에서 작업시 미끄러지거나 마찰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설비를 보강하거나 지지 로우프를 설치하여야한다.

- (마) 추락하여 매달려 흔들리는 경우 물체에 충돌하지 않는 위치에 훅을 설치 하여야 한다.
- (바)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로 우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. 로우프의 길이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로우프의 길이를 짧게하여 3종, 4종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.
- (사) 추락시에 로우프를 지지한 위치에서 신체가 떨어지는 높이보다 접지 바닥 면은 아래에 있어야 한다.
- (3) U자걸이 사용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U자 걸이로 1종, 3종 또는 4종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며, 후크를 걸고 벗길 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1종, 3종은 보조로우프, 4종은 보조후크 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나) 후크가 확실하게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자가 이동시에는 갑자기 손을 떼지 말고 서서히 체중을 옮겨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손을 떼도록 하여야 한다.
- (다) 전주나 구조물 등에 돌려진 로우프의 위치는 허리에 착용한 벨트의 위치 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(라) 로우프의 길이는 작업상 필요한 최소한의 길이로 하여야 한다.
- (마) 추락 저지시에 로우프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는 장소에 로우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클립부착 안전대의 사용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1종 또는 2종 클립부착 안전대는 로우프 끝단의 클립을 합성수지 수직지 지 로우프에 설치해서 사용하여야 한다.

- (나) 지지로우프는 클립에 표시된 굵기로서 2,340kg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다) 클립을 지지로우프에 설치할 경우 클립에 표시된 상·하 방향이 틀리지 않도록 하고 이탈방지장치를 확실하게 조작하여야 한다.
- (5) 수직 지지로우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- (가) 합성섬유 지지로우프에 후크 또는 카라비나 부착 안전대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로우프에 부착된 크립에 후크 또는 카라비나를 걸어서 사용하여야 한다.
- (나) 한 줄의 지지로우프를 이용하는 작업자의 수는 1인으로 한다.
- (다) 허리에 장착한 벨트의 위치는 지지로우프에 부착된 크립의 위치보다 위에 있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.
- (라) 추락한 경우에는 지지상태에서 다른 물체에 충돌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.
- (마) 긴 합성섬유 지지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 추락 저지시에 아래 부분의 장애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.
- (6) 수평 지지로우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- (가) 수평지지로우프는 안전대를 부착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없고 작업 공정이 횡이동 또는 작업상 빈번히 횡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벨 트의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수평지지로우프에 안전대의 후크 또 는 카라비나를 걸어 사용하여야 한다.
- (나) 한 줄의 지지로우프를 이용하는 작업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.

C - 49 - 2012

- (다) 추락하여 매달려 흔들리는 경우 물체에 충돌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.
- (라) 합성섬유로우프를 지지로우프로 사용하는 경우 추락 저지시 아래부분의 장애물에 접촉 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.

8. 안전대의 점검

책임자를 정하여 안전대의 점검, 보수, 보관 및 폐기에 대한 관리대장에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결과나 관리상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- (1) 벨트의 마모, 흠, 비틀림, 약품류에 의한 변색
- (2) 재봉실의 마모, 절단, 풀림
- (3) 철물류의 마모, 균열, 변형, 전기단락에 의한 용융, 리벳이나 스프링의 상태
- (4) 로우프의 마모, 소선의 절단, 흠, 열에 의한 변형, 풀림 등의 변형, 약품류에 의한 변색
- (5) 각 부품의 손상정도에 의한 사용한계에 대해서는 부품의 재질, 치수, 구조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벨트 및 로우프에 사용되는 나일론, 비닐론, 폴리에스텔의 재료특성 및 로우프의 인장강도는 <표 2> 및 <표 3>과 같다.

<표 2> 벨트 및 로우프에 사용되는 재료 특성

구분재료	나 일 론	비 닐 론	폴리에스텔
비중	1.14	1.26 - 1.30	1.38
내열성	연화점:180℃	연화점:220-230℃	연화점:238-240℃
	용융점:215-220℃	용융점:명료하지 않음	용융점:255-260℃
자연상태에서	카드키 코쉬디디	강도가 거의 저하하지	강도가 거의 저하하지
강도와의 관계	강도가 저하된다	않는다	않는다
내산성	강한 염산, 황산, 초산에서 일부 분해하지만 7% 염산, 20% 초산에서 강도가 거의 저하하지 않는다	강한 염산, 황산, 초산에서 늘어나거나 분해하지만 10% 염산, 30%의 유산에서는 거의 강도가 저하하지 않는다.	60% 초산에서 강도가
내알카리성	50% 가성소오다 용 액, 28% 암모니아 용 액에서 강도가 거의 저하하지 않는다	50% 가성소오다 용액 에서는 강도가 거의 저하하지 않는다.	10% 가성소오다 용 액, 28% 암모니아 용 액에서는 강도가 거의 저하하지 않는다.

<표 3> 로우프의 인장강도

지름	인 장 강 도(ton)		
(mm)	나일론 로우프	비닐론 로우프	
10	1.85	0.95	
11	2.21	1.13	
12	2.80	1.37	
14	3.73	1.83	
16	4.78	2.34	

C - 49 - 2012

9. 안전대의 보수

보수는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다음에 정하는 사항에 따라 수시로 보수하여야 한다.

- (1) 벨트, 로우프가 더러워지면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씻거나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씻은 후 잘 헹구고 직사광선을 피하여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자연 건조시켜야 한다.
- (2) 벨트, 로우프에 도료가 묻은 경우에는 용제를 사용하지 말고, 헝겊 등으로 닦아 내야 한다.
- (3) 철물류가 물에 젖은 경우에는 마른 헝겊으로 잘 닦아내고 녹방지 기름을 엷게 발라야 한다.
- (4) 철물류의 회전부는 정기적으로 주유하여야 한다.

10. 안전대의 보관

안전대는 다음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
- (1)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
- (2) 통풍이 잘 되며 습기가 없는 곳.
- (3) 부식성 물질이 없는 곳
- (4) 화기 등이 근처에 없는 곳.

C - 49 - 2012

11. 안전대의 폐기

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안전대는 폐기하여야 한다.

- (1)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로우프는 폐기하여야 한다.
- (가) 소선에 손상이 있는 것.
- (나) 페인트, 기름, 약품, 오물 등에 의해 변질된 것.
- (다) 비틀림이 있는 것
- (라) 횡마로 된 부분이 헐거워진 것
- (2)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벨트는 폐기하여야 한다.
- (가) 끝 또는 폭에 1㎜ 이상의 손상 또는 변형이 있는 것.
- (나) 양끝의 헤짐이 심한 것.
- (3) 벨트에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.
- (가) 재봉 부분의 이완이 있는 것
- (나) 재봉실이 1개소 이상 절단되어 있는 것.
- (다) 재봉실의 마모가 심한 것.
- (4)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D링 부분은 폐기하여야 한다.
- (가) 깊이 1㎜ 이상 손상이 있는 것.



[특히 <그림 3>의 × 부분]

<그림 3> D링

C - 49 - 2012

- (나) 눈에 보일 정도로 변형이 심한 것
- (다)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
- (5)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후크, 박클부분은 폐기하여야 한다.
 - (가) 후크와 갈고리 부분의 안쪽에 손상이 있는 것.

[<그림 4>의 × 부분]



<그림 4> 후크

- (나) 후크 외측에 깊이 1㎜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것.
- (다) 이탈 방지장치의 작동이 나쁜 것
- (라)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.
- (마) 변형되어 있거나 박클의 체결상태가 나쁜 것